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864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전기통신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8939	이정현의원	2025. 3. 14.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8. 26.)
	2210170	이학영의원	2025. 4. 2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8. 26.)
	2210314	전용기의원	2025. 5. 1.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8. 26.)
	2210399	한정애의원	2025. 5. 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8. 26.)
	2211130	최민희의원	2025. 6. 27.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8. 26.)
	2211546	민병덕의원	2025. 7. 1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8. 26.)
	2211553	황운하의원	2025. 7. 1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8. 26.)
	2212486	박상혁의원	2025. 8. 2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11. 17.)

건 명	의안번호	대표 발 의 자	발 의 일	회의정보	
	2212578	최민희의원	2025. 9. 1.	상 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11. 17.)
	2212763	김장겸의원	2025. 9. 8.	상 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11. 17.)
	2212865	김 현의원	2025. 9. 10.	상 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11. 17.)
	2212924	한민수의원	2025. 9. 11.	상 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11. 17.)

-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18.)에서 1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점·판매점이 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이후의 사후관리,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해킹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점검체계를 신설하며, 고의·중과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등).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32조의20제2항 등),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의21 신설).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재사유로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 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침해사고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타인사용 제한, 명도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범죄 악용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안 제32조의4제4항).
- 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체결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계약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6항·제7항 신설).
- 바. 대리점·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 사.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매뉴얼 작성·이용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한 경우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20 신설).
- 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 기준·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1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제4호의3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제32조제2항 전단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후단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한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다.

제32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게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4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의20부터 제32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 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
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등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제89조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4
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95조제4호 중 “기간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4호의3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9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04조제2항제6호 중 “제32조의4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2. 제32조의21제1항에 따른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기간통신사업자</u>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 <u>기간통신사업자(제4호의3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u> -----
1. ~ 4의2. (생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4의3.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생략)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 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③ ~ ⑦ (생략)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한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신 설>

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게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 ② (생략)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④ ~ ⑥ (생략)
<신설>

-----.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 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

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 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
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
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
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
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

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u>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u>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3조(손해배상) ① ----- -----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 -----

-----.

1. 2. (현행과 같음)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청문) -----

-----.

1.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4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 -----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u>기간통신사업</u> 을 경영한 자	4. ----- ----- <u>기간통신사업</u> (제20조제1항제4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전기통신사업</u> 을 말한다)-----
4의2. ~ 8. (생 략)	4의2. ~ 8.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u>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u>
제104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92조제1항제1호(<u>제32조의4</u>)	6. ----- <u>제32조의4</u>

<u>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③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 · 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4의21. (생략) <u><신설></u> 5. ~ 17. (생략) ⑥ (생략)	<u>제2항 또는 제4항</u>-----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1. ~ 4의21. (현행과 같음) 4의22. 제32조의21제1항에 따른 <u>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u> 5.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